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396
----------	-----

제출년월일 : 2008. 12. .

제출자 : 속초시장

1. 제안이유

- 속초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균형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함께하는 사회, 경쟁력 있는 속초시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1)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회의 용어의 정의를 둠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 1)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다. 경비 지원 (안 제4조)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협의회 설치 (안 제5조), 기능 (안 제6조)

- 1)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마. 구성 등 (안 제7조)

- 구 성 :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직기간, 그 밖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보궐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바. 의견청취 등 (안 제11조)

- 1)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수당 (안 제12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

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제5조 (P. 7)

나. 예산조치 : 2009 예산 계상 (위원회 참석수당)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08. 11. 22 ~ 12. 11)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 따로붙임 (P. 4~6)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교육청 교육장, 대학교 부총(학)장, 평생교육정보관장, 시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평생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